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영상물등에 '딥페이크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68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5.
3. 회 부 일 : 2024. 11. 6.

II.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현행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에 '딥페이크 기술'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 <u>영상물등</u> ”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u>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u>)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 ----- ----- ----- ----- ----- ----- <u>(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영상물 등을 ‘허위영상물 등’으로 통칭하면서 이를 제작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해당 조항의 신설과 관련된 제20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실재하는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 제작행위와 유통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영상물 등의 제작 등’은 현행법상 ‘편집·합성 또는 가공’에 포함되는 개념 이므로 법문에 규정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²⁾

1)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76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소위(2020. 3. 3.), 회의록, pp.33-36.

○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딥페이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³⁾

□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딥페이크’의 정의 규정을 원용하여 현행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에 딥페이크 기술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공직선거법 등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 제14조의2는 입법심사과정에서 ‘편집·합성 또는 가공’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영상물 등의 제작 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 규정에서 허위영상물 등에 딥페이크 영상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따라서, 개정안과 현행법이 처벌 대상의 범위 및 처벌의 강도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하여 딥페이크 사진·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51